

경찰 “수사 자율권 만큼 책임감도 막중”

경찰 수사지휘권 66년만에 폐지...광주경찰 반응

“수사기관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첫 걸음이라 본다. 권한보다는 책임을 무겁게 통감한다.”

60여년 간 경찰의 숙원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경찰청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뒤 나온 일선 경찰들의 대체적 반응이다.

14일 오전에 만난 고인석 광주북부경찰서 수사과장은 “책임이 무겁다”며 “초기인 만큼 시민의 입장에서 더욱 공정하고 디테일하게 수사해 실수나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임호진 광주북부경찰 강력계장은 “조직 내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미진한 부분에 더욱 신경 쓰고, 수사 절차도 간소화해 민원인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경찰 스스로 제복 입은 시민으로 돌아갈 때, 수사권 조정법안이 빛을 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을 요구한 광주광산경찰서의 한 경장은 “지금까지 검사에게만 있던 영장신청 권한을 장기적으로는 개헌을 통해서라도 경찰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경찰도 “영장발부 여부는 판사의 고유 권한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검·경 수평적 협력관계로

1차 수사 종결권 등 권한 강화

공정 수사 통해 공신력 높여야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 증가

부실 수사 뎀 사건 물릴 우려도

(제12조 3항)에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면서 “이상 태라면 검사의 영장 청구 권한에 가로막혀 경찰의 중요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 중 경찰의 권한을 대폭 늘린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경찰청법 등이 연이어 가결된 이후, 경찰내부에선 공정한 수사 등을 통해 수사기관의 추락한 공신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기존 경찰이 검찰에게 ‘수사지휘를 받던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변화되고, 경찰에게 1차 수사에 자율권이 부여(1차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되는 등 경찰

의 권한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경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66년 만에, 검·경 관계도 그동안 ‘수직’에서 ‘수평’으로 바뀐다. 이로써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 사건만 검사에게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은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를 마치면 혐의가 인정되면 아닌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했다. 이 때문에 경찰에서 ‘혐의 없음’이란 수사결과가 나온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다시 한번 수사를 진행하는 등 사건 당사자들이 2중의 고통을 겪어왔다.

이번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경에서 2중 조사를 받아야 했던 1년 기준 56만여명의 불면이 해소되고, 이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연간 500억~1500억 원)도 아끼는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된 피의자가 법정에서 방어할 여지도 커졌다. 지금까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법정에서 피의자가 부인하더라도 그 증거 능력을 인정받아 왔지만, 이제 검찰 조서도 경찰 조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법정에서 인정할 때만’ 증거 능력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사실상 제한이 없었던 경찰의 직접수사

범위도 제한된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중요범죄 및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범죄’ 등으로 제한했다.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분명 혐의가 있는 사건인데도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할 경우 그 사건이 묻혀 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소·고발인과 피해자 등에게 3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경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이와 관련한 기록, 관련 증거를 90일간 들여다보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부작용도 공존한다.

이의 제기 등을 위해 피해자는 피의자든 고소인이든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관례가 되면서 소송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찰을 중심으로 경찰의 부실수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검사의 수사지휘와 송치 후 보강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왔는데 이제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수사권 조정 법안은 공포 6개월 뒤 대통령령으로 시행 시점을 정하도록 돼 있어 올해 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유령노조 만들어 고공농성하고 3억 갈취

광주지검, 일당 5명 기소

실체가 없는 노조를 만들어 건설 현장에서 농성하며 금품을 갈취한 일당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최재봉)는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41)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모두 귀화한 중국 교포이거나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8월 26일까지 광주시 남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고공농성 등을 하며 공사를 방해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3억 1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구성원 중 한 명이 2016년 개인 공사업자 자격으로 참여했던 공사에서 하청업체 부도로 대금 6억원을 못 받게 되자

다른 공사의 원청인 건설사 현장을 찾아 간 뒤, 노조 부위원장을 맡은 B(42)씨가 타워크레인에 올라가고 나머지는 지상에서 집회하며 건설사와 협상했다.

A씨 등은 하청업체의 공사대금 체납이 원청업체와 무관한 사실을 알고도 “원청을 치면 돈이 나온다”며 공기에 쫓기는 건설사를 압박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수사 결과, 귀화한 중국 교포인 A씨는 앞서 2018년 11월 외국인 노동자 노동 조건을 개선한다며 ‘한국협동노동조합’을 설립한 뒤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5명 말고는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 등 실체가 없었으며, 주로 농성과 공사대금 추심 등을 돈벌이를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영광 칠산대교 부실시공 6명 2심도 유죄

‘부실시공으로 공사 도중 다리 상판이 무너진 사고가 난 영광 칠산대교 공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현 부장판사)는 “입찰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관계자 등 6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차적으로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 강봉을 제대로 시공하지 못해 사고가 났으나 원청과 감리단 관계자들도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작업 전 하중을 가하는 인장시험에서 일부 강봉이 견디지 못하고 분리되는 문제점이 발견됐는데도 시험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다만 과실 정도와 피해자 모두 산재 보험 처리가 된 점,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시공사인 대우·미래도시 건설 관계자 3명과 하도급업체 관계자 4명, 감리업체 관계자 2명, 대우건설, 하도급업체 등 총 11명에게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공사 전반을 감독한 대우건설 현장 소장과 공사팀장은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접속고 상부 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 현장 소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우건설과 하도급업체인 비엔지 컨설턴트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700만원과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6년 7월 8일 영광군 염산면 칠산대교 공사 현장에서 다리 상판이 균형을 잃고 무너지는 사고를 내 근로자 6명이 중경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조립식 건물 화재...50대 사망

14일 새벽 5시 29분께 여수시 울촌면 한 주택의 조립식 가건물로 지어진 별채에서 불이 났다.

불은 3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별채 안

에서 집주인 A(57)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A씨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 등 정밀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다.

/여수=김창희 기자 chkim@

SNS 어플로 만난 남성 잠들자...금반지 챙겨 달아난 여성



○·SNS 어플로 만난 남성이 잠 자기 전 빼놓은 금반지를 들고 달아난 20대 여성이 절도 혐의로 경찰수행.

○·14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여·20)씨는 지난 7월 평소 SNS 어플로 연락을 하며 친분을 쌓은 B(24)씨와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향했는데, 새벽 4시 30분께 B씨가 잠든 사이 70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챙겨 달아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빼놓은 금반지를 보자 순간 욕심이 생겼다”며 선처를 호소.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소방차 길 터주세요” 14일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에서 진행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에 참여한 북구청 직원과 상인들이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소방도로를 확보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무기계약직 취업 규칙 정규직과 동일 적용돼야” 대법 “같은 임금 지급” 판결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해 호봉이나 수당을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A씨 등 7명이 “정규직과 동일 임금을 지급하라”며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기간제로 입사한 뒤 2010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무기계약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였을 때와 동일한 형식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 적은 돈을 받았다. 기본급 및 상여금은 80% 수준만 나왔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매달 10만원 정도 적게 지급됐다. 근속수당은 지급되지 않았다. 또 2012년 5월 이후 정기적인 호봉 승급도 이뤄지지 않았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손해보험협회

보행자는 또 다른 정지신호입니다

교통사고의 약 40%가 보행자 교통사고로 위에선 보행자가 최우선입니다. 자동차든 사람이든 보고, 서고, 움직이는 습관이 도로 위 생명을 지킵니다